#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51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 박주민·강민정·강훈식

김승원 • 유정주 • 아수진비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이원택 • 정일영 • 정필모

주철현 • 한준호 • 홍정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행 당시 특별한 물적 증거가 남지 않 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 건이 다수이므로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진술의 신빙성 유 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 정서적 충 격 등 새로운 추가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 지만 발달 및 진술 특성에 따라 성년 피해자에 비하여 법정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훨씬 큼.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증인신문방식·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 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조사관)

- ① 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속 직원 중 아동·장애인에 대한 심리 및 인권,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 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 2.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 3. 사법경찰관리
- ② 법원 및 수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이하 "19세 미만 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게 하여야 한다.
- 1. 19세 미만인 피해자
- 2.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③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전문조사관에게 전문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 ④ 전문조사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전문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2(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 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조사 및 심리·재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 2.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지정된 전문조사관에 의한 진술 청취
  - 3. 동일한 전문조사관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의 진행
  - 4. 진술 청취 절차의 지연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지연 방지
  - 5.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조사 및 신문
  - 6. 동일한 장소에서 조사 및 신문
  - 7. 아동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적합한 조사와 신문 일정 및 휴식의 보장
  - 8.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 또는 대면 방지
- 9.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질문 방지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진술자였던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인정할때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2.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의 발달 수준, 장애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억 또는 증거능력의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등 피해 후유증, 자해·자살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 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이하 이 조,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 는 피해자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전에 법원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증인인 피해자에게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전문조사관,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은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문사항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전문조사관,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소송참가인의 의견을 물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공격적인 질문
- 2.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질문
- 3. 성경험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
- 4. 피해 상황을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질문 또는 답변 요구
- 5.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도 질문
- 제40조의3(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전문조사관으로 하여금 신문을 중개하도록 한다.
  - ②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추가 신문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제40조의2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신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40조의4(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한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고인의 퇴정조치
  - 2. 피고인 앞에 가림 시설 등의 설치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동석하거나 참여하도록 한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 ④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
	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조
	사관) ① 법원행정처장·검찰
	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속 직원 중 아동ㆍ장애
	인에 대한 심리 및 인권, 조사
	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u>전</u>
	문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2.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3. 사법경찰관리
	② 법원 및 수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19</u>
	세 미만 피해자등"이라 한다)
	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
	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
	게 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인 피해자

<신 설>

- 2.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③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문조사관에게 전문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전문조사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전문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9조의2(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및소송관계인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 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수사기 관과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조사 및 심리·재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 2.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과 훈 련을 받고 지정된 전문조사관 에 의한 진술 청취
- 3. 동일한 전문조사관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의 진행
- 4. 진술 청취 절차의 지연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지연 방 지
- 5.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조사 및 신문
- 6. 동일한 장소에서 조사 및 신 문
- 7. 아동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적합한 조사와 신문 일정 및 휴식의 보장
- 8.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 또는 대면 방지
- 9.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질문 방지
-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
  - ①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 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 영ㆍ보존하여야 한다.

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 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 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 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진술자였던 피해자가 그 내 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 판기일에 피해자의 조사 과정 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 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 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2.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의 발달 수준, 장애의 정도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억 또는 증거능력의 상실, 외상 후 스 트레스장애 등 피해 후유증,

⑦ (생 략) <신 설> 자해·자살 우려 등으로 피해 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 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 한 경우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이하 이 조,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에 서 "피해자"라 한다)을 증인으 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자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 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 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전에 법원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증인인 피해자에게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사전에 정해야한다. 이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전문조사관,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은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문사항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전문조사관,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소송참가인의의 의견을 물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공격적인 질문
- 2.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질문
- 3. 성경험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
- 4. 피해 상황을 과도하게 묘사

   하거나 재현하는 질문 또는

   답변 요구
- 5.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도 질문
- 제40조의3(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피해자

<u><신</u>설>

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전문 조사관으로 하여금 신문을 중 개하도록 한다.

- ②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추가 신문 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제40조의 2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피 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 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신문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신문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

제40조의4(19세 미만 성폭력범죄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에대한 특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신 설>

- 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 문한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신 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피고 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 한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고인의 퇴정조치
- 2. 피고인 앞에 가림 시설 등의설치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문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동 석하거나 참여하도록 한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 ④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